

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2007년 9월 1일 시행
 2009년 3월 1일 개정
 2009년 9월 1일 일부 개정
 2010년 5월 1일 일부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4년 9월 1일 일부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16년 9월 1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일부 개정
 2021년 3월 1일 일부 개정
 2021년 9월 1일 일부 개정
 2022년 3월 1일 일부 개정
 2022년 11월 1일 일부 개정
 2023년 2월 1일 일부 개정
 2023년 6월 1일 일부 개정
 2023년 9월 1일 일부 개정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대학원학칙 정보보호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교과목 및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

하한 취득학점	상한 취득학점	초과 취득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학기 동안 3학점	12학점	3학점	2학점
박사 3학기 동안 3학점			(매학기 신청)

제 3 조 (이수과목 지정 및 면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2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선수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 (기초공통과목 면제) 본 대학원 또는 대학원 정보보안학과(구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공통과목 이수를 면제한다.<개정 2022.3.1.>

제 5 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 시험으로 하며, 성적표 (또는 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접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정별 외국어시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정책변경시 기관이 인정하는 동일 수준의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TOEIC	710점
TOEFL	CBT 205점, IBT 75점, PBT 540점 (2019년 개정토플 응시자는 토플본부 환산표에 의해 가늠한다.)
TEPS	600점 (뉴TEPS 327점)

③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접수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한다.

④ 수료생 또는 5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9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교 외국어센터에서 시행하는 대학원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고 B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보보호학과를 제외한 계약학과는 2학기부터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은 TOPIK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능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 계약학과와 외국인으로 협약에 의해 선발된 자의 외국어시험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제 6 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학·석사연계과정 진입자는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 12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 15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응시할 종합시험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은 응시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어야 한다. 단, 이수면제 받은 경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초공통을 대체지정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과목으로 응시한다.

(2022.3.1.)

제6조의2 (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 전후로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각 학과 및 전공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

가.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서 해당 전공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국내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승인을 획득한 경우

나. 지도교수가 승인한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지에 투고가 완료된 후 해당 전공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정보보호학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해외유수학술지 2편 이상(정책전공은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제저명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해외유수학술지로 본다. 다만, 해당 분야의 상위 10% 이내 SCI급 저널 1편은 해외유수학술지 2편으로 간주한다. 단, BK21사업 참여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스마트시티보안교육연구단운영규정에 정한 별도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에 시행하는 학위청구논문 사전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BK21사업 참여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제 1호의 추가요건과 연구윤리교육 이수증빙을 학위청구논문 사전심사신청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각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 3부

2. 박사 5부

② 논문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나.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다.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라.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마.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2. 박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나.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다.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

라.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마.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바.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제 10 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①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② 크기는 4·6배판 (대략 257×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④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조항 삭제 제10조로 이동)

제 12 조 (조항 삭제 제10조로 이동)

제 13 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논문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내부교수를 위촉하거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내부교수와 지도교수가 추천한 1인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내부교수 3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과나 전공의 사정 또는 논문의 성격상 위 제2항 및 제3항의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5 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회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 17 조 (학위논문의 작성)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보완 요청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위논문을 정해진 기한내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각 학위논문은 국문이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각 학위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학위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작성 양식, 차례 등은 일반대학원 논문양식을 따른다. 학위논문 작성이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본인이 보관한다.
- 제 18 조 (학위논문의 제출) ① 학위논문은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재하고, 속지(속표지+심사완료 검인서) 스캔본을 별도 파일로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 ②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제출을 완료하면 학위논문제출확인서, 표절예방프로그램검사확인서, 학위논문 속지(속표지+심사완료 검인서)사본을 행정실에 제출한다.
- 제 19 조 (학위논문의 제본) 학위논문의 검인이 완료되면 일반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학위논문을 소장용으로 인쇄·제본할 수 있다.
- 제 19 조의 2 (지도교수변경) 지도교수 변경 가능기간을 입학 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신청서와 사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9.1.>
- 제 20 조 (조항 삭제)
- 제 21 조 (조항 삭제, 제17조로 이동)
- 제 22 조 (조항 삭제)
- 제 23 조 (석사과정 트랙별 학위청구) ① 정보보호대학원 계약학과 석사과정 및 융합보안학과 핀테크보안전공에 재학 중인 자는 ‘논문트랙’ 과 ‘교과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트랙별 학위청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의 자격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2.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추가로 전공 6학점을 이수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구지도 및 선수학점 제외 전공 총30학점 이상)
- ③ 석사과정 학위청구 트랙의 신청은 재학학기 3학기부터 학기초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신청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트랙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트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논문트랙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학점요건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추고 논문사전심사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⑤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에 추가로 전공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점요건 및 학위청구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계약학과라도 운영협약에 의해 교과트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24 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제6조(외국어시험) 제5항은 2009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의 금융보안학과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필수 이수과목) 1항의 사이버보안학과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제7조, 제8조 개정)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조, 제 12조, 제 17조, 제 22조 개정)
2. (계약학과 기 수료자의 교과트랙 학위청구) ① 계약학과 기 수료자는 석사과정생으로 2020년 2월 수료자까지 한정한다. ② 기 수료자로서 교과트랙으로 학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교과트랙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학 상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제 23조에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 학점 추가 취득 학기동안 재학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학은 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조, 별표)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9조, 제14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학위청구논문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이 개정 운영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개정, 제6조의2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개정,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의 2 신설)

[별표]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 전공과목

구분	전공대상과목	비 고
정책분야	정보보호법제 사이버국제법 위험관리 전자금융보안론	4과목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응시
기술분야	암호알고리즘1 네트워크보안 위험관리 디지털포렌식기술(디지털포렌식개론)	
정책분야	정보보호법제 사이버안보정책 위험관리 전자금융보안론	4과목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응시
기술분야	암호알고리즘1 네트워크보안 위험관리 디지털포렌식개론	
전분야	위험관리 네트워크보안 데이터법	3과목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응시 21학년도부터 적용